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72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윤재옥・우재준・김위상

조지연・추경호・주호영

김기웅 · 김상훈 · 최은석

강대식 • 권영진 • 정희용

유영하 • 이인선 • 김승수

김형동 • 김석기 • 임이자

의원(18인)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 2.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 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 3.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 4.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하천수"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

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6. "호소수"란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복류수(伏流水)"란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
- 8. "강변여과수"란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말한다.
- 9. "취수원 다변화"란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을 하천수에서 호소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으로 다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10.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란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용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원을 하천수에서 호소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으로 다변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11. "영향지역"이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따라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어 생활 여건이 변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을 말한다.
- 12. "수혜지역"이란 영향지역으로부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하여 원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낙동강 수계(水系)와 그 수계 바깥지역 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 및 먹는 물의 가치 향상
 - 2.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 3. 먹는 물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물 이용 보장을 통한 낙동강유역 물 분쟁 해결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 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 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도법」 및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 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2장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

-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목적
 - 2. 낙동강 유역 현황 분석 및 상수원 수요 예측, 지자체별 배분계획
 - 3. 취수시설 설치 및 관로노선 계획
 - 4.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등 공사계획

- 5.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6.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7.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영향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8. 그 밖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 제10조(사업시행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시행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

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환경부장관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

시계획의 승인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공원구역 행위 허가에 관한 협의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1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1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3장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 ①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영향지역의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건설 기간에 특별지원사업(이하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그 밖에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영향지역 및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상 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재원) ①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취수에 따른 기초금액과 인구수, 취수시설 개소수, 취수량과 취수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금액은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100억원으로 한다.
 - ③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와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에게취수원 다변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제16조(추진단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 화사업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워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8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4. 사정이 변경되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할 수 없 게 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21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